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 의무화 등〉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45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정훈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15.
3. 회부연월일 : 2025. 4. 1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관련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그 사업과 관련한 결산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결산 감사의 방식과 범위가 다르고, 심지어 결산 감사 방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정부 재정의 누수 우려와 함께, 정부 재정 집행의 검증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과 재정 집행 결과에 대한 효율성 검증 미비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지방보조금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는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및 사후적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

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반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는 그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에 결산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예산 집행에 관한 관리 부실 문제와 함께 일관성 결여에 따른 규제 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예산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5항 신설).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검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sup>1)</sup>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117조제5항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br>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br>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br><u>&lt;신 설&gt;</u>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br>③ (현행과 같음)<br><br>④ (현행과 같음)<br><br><u>⑤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마다 사업별로 결</u>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구체적인 대상 사무·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sup>2)</sup>,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및 사후 관리·감독 절차를 규

1) 감사반은 ① 구성원이 「공인회계사법」에 등록된 회계사로서 실무수습을 등을 이수한 자 일 것, ② 구성원이 3명 이상일 것, ③ 구성원이 직무정지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회계법인 또는 다른 감사반에 소속되지 아니할 것 등 4가지의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각호)

2) 해당 조문은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학설상 민간위탁을 규정하는 조문으로 이해되며, 이 때, 민간위탁은 사무 자체의 민영화가 아니라 경영상의 민영화 내지 기능적 민영화의 한 형태로서 민간위탁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됨(홍정선, 지방자치법상 민간위탁의 개념- 행정실무상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2013.)

참고로, 2025년 기준 서울특별시의 민간위탁 사업은 총 329개이며, 민간위탁 사업의 총 예산액은 671,688백만원, 최소 예산액은 56백만원, 최대 예산액은 33,489백만원임.

정하고 있으며, 40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의 결산서 작성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sup>3)</sup>.

### <회계감사 의무 적용 지자체 현황 및 예산 금액>

|             | 지자체 수 | 예산 금액               |
|-------------|-------|---------------------|
| 회계감사 의무 적용  | 40개   | 33,200억원<br>(24%)   |
| 회계감사 의무 미적용 | 203개  | 105,600억원<br>(76%)  |
| 합 계         | 243개  | 138,800억원<br>(100%) |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결산서 작성 및 회계감사 절차를 적용하려는 것

####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정산)** ③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고 도지사가 지정한 회계전문가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적용대상 사업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로, 회계감사를 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속 공무원 등을 통한 자체감사를 시행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9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및 지도·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따른다.

**제20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시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인증 또는 감사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 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집행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참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정산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 총액이 1억원(지방보조사업의 경우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며,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4)</sup>.

####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첫째, 개정안은 회계감사의 구체적인 대상 사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의 규모<sup>5)</sup>, 회계감사 인력의 지역별 분포<sup>6)</sup>, 수탁기관의 감사비용 부담능력<sup>7)</sup>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위임의 형식을 ‘조례’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

둘째,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감사주체로 ‘회계법인 및 감사반’을, 감사의 형태로 ‘회계감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감

---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참고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10억원 이상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만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위탁 규모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6) 총 26,226명의 공인회계사 중 약 82.9%인 21,737명이 서울에 분포해있으며, 233개의 회계법인 중 198개, 264개의 감사반 중 182개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

7)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액 10억원 이상의 보조금 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감사의 평균보수는 약 600만원 수준임.

사방식이 민간위탁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의회가 2022. 04. 2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sup>8)</sup>”로 개정하면서 세무사 또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sup>9)</sup>한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sup>10)</sup>과 관련하여, ‘엄격한 회계에 의한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간이한 결산서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390호, 2022.04.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9)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390호, 2022.04.28. 일부개정)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비 결산 검사인”이라 한다)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2.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10) 참고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재의요구는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지시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

– 사무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 관련 서류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가 검증하는 것으로 회계감사에 포함

○ 개정조례(안)은 다른 법률의 근거 없이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를세무사에게 허용하여 공인회계사법 제50조(업무의 제한)을 위반

– 공인회계사법은 다른 법률의 근거 없이 공인회계사가 아닌자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

– 개정조례(안)에 따라 서울시장 지정한 세무사가 해당 업무를수행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

서울특별시시장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

이에 비추어 볼 때,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수단을 입법화 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의 목적, 수탁사무의 규모와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업무분장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 ② 세무사 등에 의한 간이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방식, ③ 개정안과 같은 회계법인 등에 의한 회계감사 방식 간의 종합적인 비교·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sup>11)</sup>.

#### <현행법상 회계사와 세무사의 직무>

|     |                                                                                                                                                                                                                                                                                                                                         |
|-----|-----------------------------------------------------------------------------------------------------------------------------------------------------------------------------------------------------------------------------------------------------------------------------------------------------------------------------------------|
| 회계사 |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br>2. 세무대리                                                                                                                                                                                                                                                                                  |
| 세무사 |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br>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br>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br>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br>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br>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br>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br>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

11) 참고로, 국가기관의 민간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외부의 제3자에 의한 감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탁기관의 직접감사만을 규정하고 있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회계감사 방식으로 규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방식의 이행감사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유형>

#### ○ 감사유형 : 이행감사(사업비 정산감사 실시)

- 수탁기관 자체(법인)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가 아닌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보고서(이행감사)를 제출받아야 함
- 투자 · 출자 · 출연기관이 수탁기관인 경우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기관단위 회계감사 시, 각 위탁사무별 회계감사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포함하여야 함

#### ※회계감사의 유형

- ▲ 업무감사 : 조직의 능률과 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운영 절차를 검토
- ▲ 이행감사 : 규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
- ▲ 재무제표감사 : 회계원칙(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지 검토

※자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한편, 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지방보조금의 경우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는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의 주체를 회계법인 등에서 세무법인 등으로 확대하려는 취지의 「보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보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 각각 계류되어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회계투명성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의무적인 회계감사 제도는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치행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대상사무·절차 등 구체적 사항

은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일관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규정 및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고려할 때 회계법인 등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률적인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② 회계감사는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목적에서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사업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34 |